

# 『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5명

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및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지원사업의 범위(안 제7조)
- 주거지원 정책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11. 12. ~ 11. 19.) 결과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폭력·학대·방임·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여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종래에 가출청소년, 비행청소년이라 불렸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우리시가 이들을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